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4년 2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세무 및 법률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추진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4.1.26]

주요내용

주요내용

-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
 - 이에 '21 및 '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건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기본 의무사항은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 *'21 및 '22 회계연도의 총 위반 건수는 각각 10건, 14건으로, 과거 5년('16~'20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약 43건) 대비 크게 감소
- 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결산을 진행중인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주요 내용]

-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법규 미인지로 인한 위반을 방지
- ✓ 회사는 내부회계 관련 내규 마련 외에도 충분한 자원, 인력 등을 투입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
- ✓ 회사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필수 공시서류 및 공시 방식을 확인하여 정확히 공시
- ✓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I.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개념)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 규정, 조직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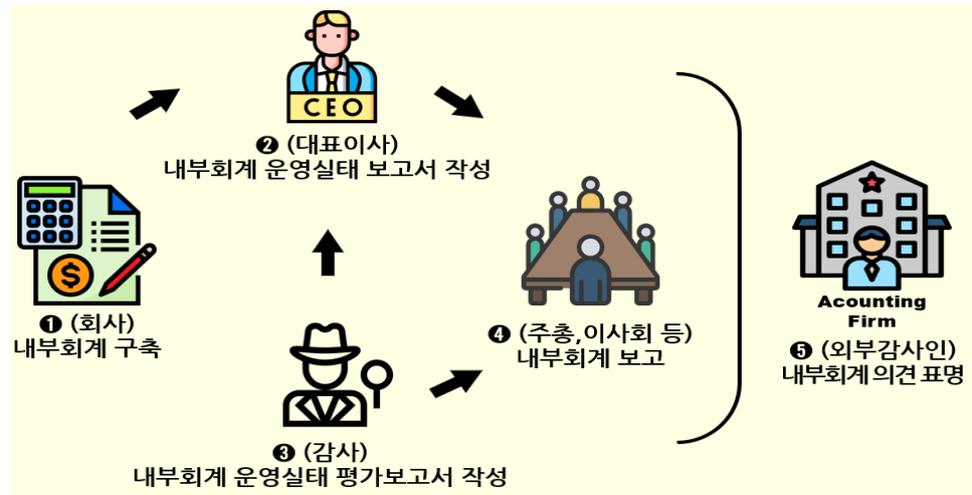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23.5.2.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요건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운영)회사,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은 각각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운영실태 보고, 평가, 감사(검토)의견 표명 등의 역할을 수행

◦구체적으로 ①회사의 내부회계 구축*, ②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 ③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외부감사인인 인증(감사 또는 검토)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검증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시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

※ 상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도 과태료(3천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됨(외부감사법 제47조 제2항)



점검결과
유의사항

II. 점검결과 유의사항 안내

1.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공시 관련

◆회사는 자산총액 증가, 상장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

*단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금융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필요

[위반사례]

-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내부회계 구축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
- ✓B사는 자회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내부회계 구축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

◆회사는 자원·인력 등을 충분히 투입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충실히 갖추어야 함

[위반사례]

✓C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갖추고 있었으나, 내부회계관리 인력이 모두 퇴사하였음에도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인력을 보완하지 않아 제도가 운영되지 않음
 ✓내부회계 도입 초기인 D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은 갖추고 있었으나, 내부회계관리 조직 인력을 갖추지 못함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의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②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③감사인 검토(감사)의견을 첨부

[위반사례]

✓E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운영실태보고서는 첨부하였으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는 첨부하지 않음

2. (대표이사·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의무 관련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례]

✓F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를 보고하였으나, 이사회 및 감사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고, 감사도 평가의무를 미이행
 ✓G사 대표이사는 주총,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외부감사인) 의견 표명 의무

◆감사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회계 의견을 표명

[위반사례]

H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서 정의한 방식으로 내부회계 관련 의견을 표명하여야 함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②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위반사례]

✓K사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표명함

향후계획

Ⅲ. 향후 계획

□금감원은 회사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법규 및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

◦또한, 최근 개정내용*의 충실한 숙지 및 이행 등을 통해 회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 마련('23.12.29. 금감원 보도자료)

◦한편, '23년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하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추진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추진

□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법 제 2 장의 2, 조특법 §14 등)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input type="radio"/> (시행일) '25.1.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현행 양도세 체계 유지

<개정이유>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2.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1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input type="radio"/> (공제방식) 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input type="radio"/> (공제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 분</th> <th>당기분 (㉠, %)</th> <th>증가분 (㉡, %)</th> </tr> </thead> <tbody> <tr> <td>중소기업</td> <td>25</td> <td>50</td> </tr> <tr> <td>중견기업</td> <td>8~15</td> <td>40</td> </tr> <tr> <td>대기업</td> <td>최대 2</td> <td>25</td> </tr> </tbody> </table>	구 분	당기분 (㉠, %)	증가분 (㉡, %)	중소기업	25	50	중견기업	8~15	40	대기업	최대 2	25	<input type="checkbox"/> 증가분 공제율 조정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증가분 공제율 1년 한시 상향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 분</th> <th>당기분 (㉠, %)</th> <th>증가분 (㉡, %)</th> </tr> </thead> <tbody> <tr> <td>중소기업</td> <td>25</td> <td>60</td> </tr> <tr> <td>중견기업</td> <td>8~15</td> <td>50</td> </tr> <tr> <td>대기업</td> <td>최대 2</td> <td>35</td> </tr> </tbody> </table>	구 분	당기분 (㉠, %)	증가분 (㉡, %)	중소기업	25	60	중견기업	8~15	50	대기업	최대 2	35
구 분	당기분 (㉠, %)	증가분 (㉡, %)																							
중소기업	25	50																							
중견기업	8~15	40																							
대기업	최대 2	25																							
구 분	당기분 (㉠, %)	증가분 (㉡, %)																							
중소기업	25	60																							
중견기업	8~15	50																							
대기업	최대 2	35																							

<개정이유>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91 의 18, §129 의 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p> <p>○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p> <p>*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p> <p>○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p> <p>○ (납입한도) 1억원 (연 2천만원)</p> <p>○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농어민 400만원)</p> <p>*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 (9%)</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p> <p>○ (좌 등)</p> <p>○ (좌 등)</p> <p>○ 2 억원 (연 4 천만원)</p> <p>○ 500 만원 (서민·농어민 1 천만원)</p> <p><input type="checkbox"/> 국내투자형 ISA 신설*</p> <p>* 일반 ISA 와 국내투자형 중 1 계좌 가입</p> <p>○ (가입대상) 일반 ISA 와 동일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p> <p>○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p> <p>* 국내주식에 일정비율(대통령령) 이상 투자</p> <p>○ (납입한도) 2 억원(연 4 천만원)</p> <p>○ (비과세한도) 1 천만원 (서민, 농어민 2 천만원)</p> <p>-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없이 14% 분리과세</p>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주식시장 수요기반확충

<적용시기> 법 시행 전 가입자에 대하여도 적용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임시투자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내용)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기본공제율 및 모든 시설투자 추가공제율 상향 <input type="checkbox"/> (공제방식) 당기분 추가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기본공제(㉠, %)</th> <th rowspan="2">추가공제(㉡, %)</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3</td> <td>7</td> <td>12</td> <td rowspan="3">10</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6</td> <td>10</td> <td>18</td> </tr> <tr> <td>국가전략 기술</td> <td>15</td> <td>15</td> <td>25</td> </tr> </tbody> </table>	구 분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대	중견	중소	일 반	3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6	10	18	국가전략 기술	15	15	25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등) <input type="checkbox"/> (좌 등) <p style="margin-top: 20px;"><input type="checkbox"/> '24.12.31..</p>
구 분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대	중견	중소																			
일 반	3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6	10	18																			
국가전략 기술	15	15	25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3.12.31..	<input type="checkbox"/> '24.12.31..																					

<개정이유> 투자 활성화 지원

5.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특법 §98의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1)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구체적 요건 및 확인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① (양도세)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및 장특공제 상향(최대 30%→80%) ② (중부세)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상향(9→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적용시기> (양도세)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부세)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6.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 의 2)

현 행	개 정 안																																																				
<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p>○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p> <p>○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p> <p>○</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④ 전통시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r> <td>⑤ 대중교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r> <td>⑥ '24년 사용금액 증가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p> <p>○ (공제한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th> <th style="text-align: center;">7천만원 이하</th> <th style="text-align: center;">7천만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공제한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추가 공제 한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통시장</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중교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서공연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4년 증가분</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body> </table> <p>○ (적용기한) '25.12.31.</p>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	40%	⑤ 대중교통	40%	⑥ '24년 사용금액 증가분**	1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	도서공연등	-	-	'24년 증가분	100만원		<p>□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등사용금액</p> <p>○ (좌 등)</p> <p>○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 및 사용금액 증가분 공제율 상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④ 전통시장 ('24.1.1.~6.30. 사용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80%)</td> </tr> <tr> <td>⑤ 대중교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r> <td>⑥ '24년 사용금액 증가분</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상반기 사용금액 증가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하반기 사용금액 증가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body> </table> <p>○ (좌 등)</p> <p>○ (좌 등)</p>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 ('24.1.1.~6.30. 사용분)	(80%)	⑤ 대중교통	40%	⑥ '24년 사용금액 증가분		▪ 상반기 사용금액 증가분	20%	▪ 하반기 사용금액 증가분	10%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	40%																																																				
⑤ 대중교통	40%																																																				
⑥ '24년 사용금액 증가분**	1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																																																		
	도서공연등	-	-																																																		
	'24년 증가분	100만원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 ('24.1.1.~6.30. 사용분)	(80%)																																																				
⑤ 대중교통	40%																																																				
⑥ '24년 사용금액 증가분																																																					
▪ 상반기 사용금액 증가분	20%																																																				
▪ 하반기 사용금액 증가분	10%																																																				

<개정이유> 소상공인 매출회복 및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7.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조특법 §109 의 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지원요건)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p> <p>① '13.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23.12.31.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p> <p>②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p> <p><input type="checkbox"/> (세제혜택)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p> <p>*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p> <p>○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p> <p><input type="checkbox"/> (요건 미충족*시 추정)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p> <p>* 예) ①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②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시행일~'24.12.31.</p> <p>* 시행일 전일 이전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있는 승용차(기 반출되어 재고로 있는 승용차)구입시에도 환급</p>

<개정이유>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친환경 소비촉진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적용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이 2012년~2016년인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서면징세 2023-2706, 2024.02.06)

(사실관계)

- 2016.2.23. 근로자가 통상임금 소송을 법원에 최초 접수함.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한 시급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구하는 소송임.
 - 미지급분 해당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 6개월분임
- 2022년 1월 1심 승소를 시작으로 2023년 7월 3심까지 전부 승소함

(질의내용)

-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의 귀속시기가 2012년~2016년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령해석과-1463, 2019.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법령해석기본 2019-266, 2019.06.11]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즉,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 (기획재정부법인-49, 2024.01.25)

(질의)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2안>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2024년 2월호

-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가 무상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상속증여 2023-3576, 2024.02.06)

(사실관계)

-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프랑스계 외국인학교로 프랑스대사와 서울시 교육청의 인가로 2002.3월에 개교함.
- ○○○국제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AAA*"를 "BBB**"로 변경하고자 함.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하며,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있음.
- BBB는 설립자 변경을 위해 ○○○학교 경영을 목적으로 "BBB 분사무소*"를 국내에 설치함

(질의요지)

-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가 무상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T Consulting ▪ CRM / Risk Management 등 ▪ ESG 전략 및 시스템 구축자문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